

YBLN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름) 본회의 이름은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영문으로는 “Young Business Leaders Network” 혹은 “YBLN”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전세계에 위치한 한인 비즈니스 리더들 간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 사무실 혹은 회장이 정하는 곳에 위치한다.

제 4 조 (구성) 본회의 구성은 본 정관에서 정하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 부회장, 국가 또는 지역 대표,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5 조 (해산) 본회는 정회원의 삼분의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정회원) 재외동포재단 (혹은 그 후속단체)이 개최하는 ‘한상대회’내 ‘영비즈니스리더포럼’ (Young Business Leaders Forum: YBLF) 1 회 이상 참가자 또는 시티포럼/지역포럼 2 년 이내 3 회 참석자 가운데 제 8 조를 포함한 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한 준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의 기준에 대하여 멤버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정할 수 있고, 이는 본 정관의 부칙으로 간주된다.

제 7 조 (준회원) 재외동포재단 (혹은 그 후속단체)이 개최하는 ‘한상대회’내 ‘영비즈니스리더포럼’ (Young Business Leaders Forum: YBLF) 1 회 참가자 가운데 제 8 조를 포함한 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준회원의 기준에 대하여 멤버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 1 항 (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은 본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본회의 총회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판단할 경우 회장의 명령에 따라 정회원의 활동과 권리가 중지된다.

제 2 항 (준회원의 권리 및 의무) 준회원은 본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권리는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준회원은 본회의 총회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판단할 경우 회장의 명령에 따라 준회원의 활동과 권리가 중지된다.

제 3 항 (회비 납부 의무) 정회원과 준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회비 액수 및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하여 정한다.

제 3 장 임원 (회장, 회장단, 운영위원회)

제 9 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 회장은 만 45 세 이하의 정회원 가운데 본회의 정관 및 결정사항을 준수한 자로 본회의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들의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 년 단임제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 조건에 부합되는 정회원 중 1 인을 회장후보로 본회의 총회에 추천하며, 본회의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들의 삼분의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인한다.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회장 후보가 본회의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들의 삼분의이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새로 회장 후보 1 인을 본회의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 년 단임제로 한다.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총회에서 정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고, 유고 시 선출된 차기 회장은 직전 회장의 임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0 조 (회장단의 선출 및 임기) 본회의 회장단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을 포함한다.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수의 회장단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임 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을 맡게 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단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1 조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국가 또는 지역대표,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정 사항은 전체 회원에게 강제될 수 있다. 회원이 전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본회의 특성상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그 성원이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전화, 화상회의 또는 위임장의 전달 등 기타 회장이 결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개최, 참석, 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불신임 및 해임)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임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회원들은 불신임 및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불신임안은 본회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가결되며 해임안은 본회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삼분의이 (2/3) 이상의 투표로 가결된다.

제 13 조 (임원의 급여) 본회의 목적과 특성상 총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한 회장을 포함한 본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는 없다. 단, 본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 14 조 (재산 및 회계의 관리와 지출) 본회의 재산 및 회계의 관리는 회계, 혹은 회장이 임명한 자가 수행하며, 회계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다.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은 회장단 회의 혹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출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원의 자료 요청) 본회의 정회원은 회장, 회계 혹은 본 정관 제 13 조에 의거 회장에 의해 회계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본회의 재산 및 회계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열람 요청에 대해 요청 수령자는 성실히 요청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6 조 (회비) 본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인준되었거나 총회에서 결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비 미납부 회원은 투표권이 정지된다.

제 5 장 정관

제 17 조 (정관) 본회는 본 정관에 의해 운영된다.

제 18 조 (정관의 개정) 본 정관의 채택과 개정은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절차는 제 6 장에 따르되,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본 정관 개정안을 본회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삼분의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6 장 총회

제 19 조 (정기총회) 본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 개최지 및 장소는 한상대회 영비즈니스포럼 개최일시와 장소를 고려하여 회장단이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 20 조 (임시총회)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총회 개최지 및 장소, 안건 등은 회장이 최소 20 일전 사전 공지로 정한다.

제 21 조 (성원) 전체 정회원 가운데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의 삼분의일 (1/3) 이상 참석을 성원으로 간주한다. 단, 회장이 정하는 양식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본 21 조 (성원) 목적상 참석을 갈음할 수 있다.

제 22 조 (투표) 본 정관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총회의 결의사항은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정회원들의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전자투표의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7 장 기타

제 23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정관은 한국법에 의거 해석되며 본정관에 대한 어떠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관할권을 둔다.

제 24 조 (통지) 본정관상 고지나 통지 사항들은 회장이나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소지나 이메일주소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되면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